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9회 정례회 '18. 12. 03.(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###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명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  - O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  - O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### 3. 제안사유

○ 상위법령인「치매관리법」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표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 보완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개정 (안 제2, 6조)
  - (현행) "진료·요양" → (개정) "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"
  - (현행) "치매상담센터" → (개정) "치매안심센터"
- 나. 불필요한 약어 표기 삭제 (안 제3조)
- 다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(안 제7조) - (현행) "재위탁" → (개정) "재계약"
-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### 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치매관리법」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 및

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표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 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2조제3호는, 「치매관리법」개정으로 "치매관리"의 정의가 현행 "치매의 예방과 진료·요양 및 조사·연구 등"에서 "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·연구 등"으로 확대된 바,이에 따른 개정으로 사료됨.

# ※ 치매관리법 (개정일 2018. 6. 12.)

#### 제2조(정의)

- 3. "치매관리"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말한다.
- 안 제3조는, 불필요한 약어 표기("충청북도민" → "도민")를 삭제 하였고,
- 안 제6조는, 「치매관리법」개정에 따라 현행 "치매상담센터"를 변 경된 기관명인 "치매안심센터"로 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가 개정되면서, "재위탁"과 "재계약"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,
  -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"재위탁"은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 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, "재계약"으로 변경하였음.

# ※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(개정일 2018. 10. 1.) 제2조(정의)

- 4. "재계약" 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재위탁" 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 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치매관리법」개정에 따라, "치매관리"용어를 재정의 하고, "치매상담센터"를 "치매안심센터"로 변경하는 등조례의 용어, 문구를 재정비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하며, 해당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